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5. 3. 6.  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년 2월 16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17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 
제4차 회의(2015년 3월 5일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박춘은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의하여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』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(안 제3장 이하)
-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플라자를 통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, 개편(안 제13조)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에 의거 조례 조문내용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○ 본 조례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,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라 가정양육지원 기능이 추가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,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)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,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등 기존의 시설보육지원 위주에서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종합적 보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기능이 추가되었음.

○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과 중복되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·운영 및 기능 관련 조항을 삭제함.

○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--

1) 일시보육 서비스 :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6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 이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의하여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』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(안 제3장 이하)
- 나.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플라자를 통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, 개편(안 제13조)
- 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에 의거 조례 조문내용 정비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)
  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  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- 라. 기 타
  - (1) 입법예고(2015. 1. 15 ~ 2015. 2. 4, 20일간) 결과:  
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”으로, “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영등포구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보육지원담당주사”를 “보육행정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”를 “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보육정보센터·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”을 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(이하 “보육정보센터”라 한다)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

제13조제1항제5호 중 “조력 및 정보”를 “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

7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

8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
9.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

10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제2항은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, 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각각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15조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, 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기간만료 후”를 “기간 만료 3개월 전에”로 한다.

제24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1조제3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4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영유아보육법」 ----- ----- 영등포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설치)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5조(설치)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----- --.</p>
<p>제6조(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<u>보육지원담당주사</u>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보육행정담당주사</u>-----.</p>
<p>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1차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<u>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</u>.</p>	<p>제8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-- <u>한차례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직에 재직</u> <u>하는 기간으로 한다</u>.</p>
<p>제9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<u>당해</u>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、③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.</p> <p>②、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장 <u>보육정보센터·영유아플라자</u> 설</p>	<p>제3장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 설치 및 운영</p>

치 및 운영

제12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보  
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, 제공 및 상  
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  
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(이하  
“보육정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 
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
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비영리  
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 
있다.

③ (생략)

제13조(기능) ①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 
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·상  
담 및 교육

5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 
조력 및 정보의 제공

6.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

7.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

8.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, 어  
린이집 이용실태 조사

9.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 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〈신설〉

제12조(설치 및 운영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기능) ① 육아종합지원센터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  
담 및 컨설팅

5. ----- 정보  
-----

6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

7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

8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 
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
9.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

10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



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〈삭 제〉

② 영유아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
2.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
3.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, 놀이 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
4.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 발달 등 성장지원
5.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(구성)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,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명한다.

③ 보육전문 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

제14조(구성)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 
-----  
-----.

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 
-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

면한다. 다만,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개채용을 통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비용)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.

제23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손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, 수탁자가 기간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.

제24조(위탁의 취소) ①、② (생략)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31조(비용의 보조 등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

----- . -----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-----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④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<삭 제>

제15조(지도·감독) -----

-----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----- 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용)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제23조(위탁기간) -----

----- 기간만료

3개월 전에-----

제24조(위탁의 취소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라-----

제31조(비용의 보조 등) -----

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비

4. ~ 9. (생략)

제32조(보조금의 반환)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

제3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4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보조금의 반환) -----  
----- 각호의 어느 하나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그 밖에 -----  
-----

제34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 
-----  
-----.